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21-08-27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1고단1655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하재무(기소), 신승현(공판)
판 결 선 고 2021. 7. 13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'C'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.

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20. 12.



22.경 피해자인 덴마크 'D'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, 영화 캐릭터를 D 고유의 블록 완구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5,370점(정품 시가 421,573,940원)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보고

1. 압수조서

1. 각 수입신고서, 수입·납세신고정정승인(신청)서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, 제124조 제1항 제1호(징역형 선택)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몰수

저작권법 제139조

양형의 이유

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,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,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 및 경위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21-08-27

판사 정철희 _____